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0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우리구 근거 조항을「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변경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나.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위원회 검토 대상 및 검토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이 2016. 1. 27. 일부개정 되어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변경 및 위원회 검토 대상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규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 정비하였고,
- 안 제2조의2를 신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고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검토 대상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2016. 1. 27. 일부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자문기

구인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법령 및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전문개정 2012.8.22.]